

[별표 1]

반납액의 산정기준표(제15조 관련)

구분	반납액
1. 임용전 선발 취소된 자	지급 장학금 전액
2. 임용후 전역 또는 제적된 자	$\text{지급 장학금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가산월수} - \text{복무월수}}{\text{의무복무가산월수}}$

비고 :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